서울특별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

2415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
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'서울시 힐링센터 쉼표'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서울시 직원의 정신 건강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·운영 중인 시설로서,
- 나. 2021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
 - ○필요성
 - 힐링센터 쉼표는 심리상담,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문제를 완화·해소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
 - 힐링센터 쉼표가 체계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,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

- 다.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
 - 심리상담(개인상담, 집단상담, 가족상담)
 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, 정신전문요원, 상담심리사 등을 통한 상담
 - 심리검진(온라인 검진 포함)
 - 마음건강 고위험군 발견, 심리문제의 원인과 대상자 이해 등을 위한 심리검진 실시
 -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
 - 스트레스 해소, 마음 회복능력 강화, 관계성 향상 등
- 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본청사 지하2층, 서소문청사 1동 1층

○ 규 모 : 본청사 83.63 m³, 서소문청사 62.86 m³

○ 지원시설: 개인상담실 각 2개, 집단상담실 각 1개, 사무실 각 1개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2.01.01. ~ 2024.12.3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	총 계	산출근거	금 액	구성비
인 건 비			358,900	72.3%
	기본급	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(보건복지부) 기준 (단, 전문의는 촉탁의사 기본급 여충담금 2배 적용)	263,100	
	제수당		18,600	
	상 여 금		25,200	
	퇴직급여충담금		24,100	
	사회보험료		28,000	
운 영 비			32,000	6.5%
	교육훈련비	보수교육 200,000원×5명 수퍼비전 400,000원×5명	3,000	
	소모품	문구류 등 71,000원×100개 복합기 렌탈 200,000원×12월 정수기 렌탈 40,000원×12월	10,000	
	전산이용료(홈페이지 포함)	홈페이지 관리 17,040,000원 고객관리 프로그램 960,000원	18,000	
	재물보험료	83,000원×12월	1,000	
사 업 비			105,000	21.2%
	부서로 찾아가는 쉼표	1,000,000원×20회	20,000	
	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	1,000,000원×50회	50,000	
	마음건강 캠페인	2,500,000원×2회	5,000	
	지정클리닉	1,000,000원×30명	30,000	
	위탁비 총계		496,000	100%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○ 심 의 일 : 2021.05.17.(월)

○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
 - ▶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.
 - 1.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
 - 2.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
 - 3.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
 - ▶ 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단,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 (중략)
 - 11.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 - 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중략)
 - 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

다. 기 타: 그 간 민간위탁 현황

구분	위탁기간	위탁업체	선정방법
최초위탁(1차)	'13.05.07~'16.02.29.	㈜다인	공개모집
재위탁(2차)	'16.03.01~'18.12.31.	㈜다인	공개모집
재위탁(3차)	'19.01.01~'21.12.31.	㈜이지웰니스	공개모집

※ 작성자 : 인력개발과 건강팀 장진아 (☎ 2133-5784)